

목 차

주요 사항 보고서	1
【대표이사 등의 확인】	2
I. 보고 사유	4
II. 보고 내용	4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 · 비율]	8

주요사항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1년 08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롯데삼강
대 표 이 사 : 김 용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1
(전 화)02-2629-0114
(홈페이지) <http://http://www.lottesamk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리 (성 명)이일권
(전 화)02-2629-025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주요사항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주요사항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1.08.26

【주식회사 롯데삼강】

대표이사 【김용수】

신고업무담당이사 【김용기】

I. 보고 사유

합병 결정

II. 보고 내용

제1절 합병 등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롯데삼강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1
	대표이사	김 용 수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
	대표이사	김 용 수
	법인가분	주권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양사간의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 시너지 발휘를 통해 기존사업부문에서의 사업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경영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제과(주)(9.79%)이며,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회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해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피합병법인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양사간 합병을 통해 유통 채널별 영업전략을 통합·관리하여, 판매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관리 강화 및 리스크 축소로 시장 내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의 방법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존속하고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해산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구분	주식회사 롯데삼강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합병의 형태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해당요건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가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100%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거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주권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이사회 결의 또는 계약체결 이전의 중요 진행 경과

- 합병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11년 8월 26일

나. 합병의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주)롯데삼강(합병회사)	파스퇴르유업(주)(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1년08월26일	2011년08월26일
주주명부폐쇄공고	2011년08월29일	2011년08월29일
합병계약일	2011년09월01일	2011년09월01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11년09월14일	2011년09월14일
소규모·간이합병 공고일	2011년09월14일	2011년09월14일
주주명부폐쇄기간	2011년09월15일부터 2011년09월21일	2011년09월15일부터 2011년09월21일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접수기간	2011년09월14일부터 2011년09월28일	2011년09월14일부터 2011년09월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1년09월29일	2011년09월29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2011년09월30일	2011년09월30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2011년09월30일부터 2011년10월31일	2011년09월30일부터 2011년10월31일
합병기일	2011년11월01일	2011년11월01일
합병종료보고(이사회결의일)	2011년11월01일	2011년11월0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1년11월01일	2011년11월01일
합병(소멸)등기신청(예정)일	2011년11월03일	2011년11월03일

주1)합병승인 주주총회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과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가 각각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주2)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간이합병의 요건 중 피합병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주주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합니다.

주4)"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이며,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일 입니다.

주5)주식회사 롯데삼강의 "합병 종료보고 공고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문공고로 갈음합

니다.

주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 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주)롯데삼강과 파스퇴르유업(주)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2) 본 건 합병에 필요한 양사 이사회 의 승인, 정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위법하게 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주)롯데삼강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이 경우 소규모 합병은 무산되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됨)

(5)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체결일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승인 이사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의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피합병회사의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계약은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합병기일이 상호 합의로 변경되지 않으면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제2절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등 가액

가. 평가의 개요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롯데삼강과 피합병법인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1년 8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나. 합병비율산출 요약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 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377,47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3,0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어 이에 의한 합병비율은 1:0.0346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는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방식을 적용합니다.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 · 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주)롯데삼강)	피합병법인 (파스퇴르유업(주))
기준주가	370,000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평균	-	16,541
- 자산가치	377,478	5,740
- 수익가치	-	35,380
상대가치	-	9,558
합병가액(1주당)	377,478	13,050
합병비율	1	0.0346

※ 피합병법인인 파스퇴르유업(주) 기준주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1) 합병법인(주식회사 롯데삼강)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1년 8월 25일 / 영업일 기준)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증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증가, 최근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증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기 기준주가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기 준 주 가(A)	370,000
1주당 자산가치(B)	377,478
합병가액(MAX[A, B])	377,478

① 기준주가의 산정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1년 8월 26일 이며, 합병계약예정일은 2011년 9월1일이므로 양일 중 앞선 날인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11년 8월 25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이며, 동일을 기산일로 한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단위: 원)

항목	금액
(a)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월간의 평균종가	407,796
(b)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361,474
(c) 최근일 종가(2011년 8월 25일 종가)	370,000
산술평균종가(d=(a+b+c)÷3)	379,757
기준주가 = Min [(c), (d)]	370,000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1년 8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치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11.07.26	426,000	6,874	2,928,324,000
2011.07.27	428,000	7,598	3,251,944,000
2011.07.28	437,000	6,052	2,644,724,000
2011.07.29	436,000	6,894	3,005,784,000
2011.08.01	444,500	6,772	3,010,154,000
2011.08.02	448,000	6,495	2,909,760,000
2011.08.03	445,500	5,659	2,521,084,500
2011.08.04	437,000	4,687	2,048,219,000
2011.08.05	435,000	13,161	5,725,035,000
2011.08.08	418,500	9,724	4,069,494,000
2011.08.09	395,000	19,341	7,639,695,000
2011.08.10	403,000	10,222	4,119,466,000
2011.08.11	403,500	4,651	1,876,678,500
2011.08.12	414,000	4,633	1,918,062,000

2011.08.16	430,000	2,862	1,230,660,000
2011.08.17	409,500	20,947	8,577,796,500
2011.08.18	396,000	6,464	2,559,744,000
2011.08.19	388,500	9,252	3,594,402,000
2011.08.22	351,500	5,599	1,968,048,500
2011.08.23	348,000	9,554	3,324,792,000
2011.08.24	345,500	7,004	2,419,882,000
2011.08.25	370,000	5,445	2,014,650,000
합계		179,890	73,358,399,000
최근1개월 가중평균종가			407,796
최근1주일 가중평균종가			361,474
최근일종가			370,000
산술평균종가			379,757

② 자산가치의 산정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476,057,230,119
B. 조정항목(a - b)	(720,952,960)
a. 가산항목	260,620
(1) 자기주식	260,620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721,213,580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721,213,580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475,336,277,159
D. 발행주식총수(주)	1,259,243
E. 1주당 자산가치(C ÷ D)(원)	377,478

2) 피합병법인(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적용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	16,541	$[a + (b \times 1.5)] \div 2.5$
a. 자산가치	5,740	
b. 수익가치	35,380	
B. 상대가치	9,558	
C. 합병가액	13,050	$[A+B] \div 2$

① 자산가치의 산정

1주당 자산가치는 최근 사업연도말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846,005주입니다.

※ 적용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단위: 원)

항목	금액	비고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자본총계)	4,861,887,948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6,125,000)	
조정된 순자산가액(A)	4,855,762,948	
발행주식총수(B)	846,005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자산가치(A/B)	5,740	

②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항목	추정1차년도	추정2차년도	비고
----	--------	--------	----

추정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3,902,654,398	3,930,946,626	
(차감) 법인세 등	918,042,364	924,889,084	
각사업연도 추정이익	2,984,612,034	3,006,057,543	
발행주식총수	846,005	846,005	(주1)
주당 추정이익	3,528	3,553	
주당 가중평균추정이익(A)		3,538	(주2)
자본환원율(B)		10%	(주3)
주당수익가치(A/B)		35,380	

(주1) 발행주식총수는 2011년 8월 25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주당 액면가 5,000원 기준)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 2011년 및 2012년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자본환원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상대가치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의 선정요건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유사회사의 선정요건 및 검토결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개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유사회사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상장회사명	시행세칙 7조 6항 1호			시행세칙 7조 6항 2호			시행세칙 7조 6항 3호			시행세칙 7조 6항 4호			증권발행및공시등에 대한규정 제5-13조		최종결정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단위: 원)	액면가의 10% (단위: 원)	총족여부	주당순자산가액	액면가액 (단위: 원)	총족여부	상장일	총족여부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총족여부	동일한 회계기준일 것 (주1)	총족여부			
남양유업	134,272	500	Yes	885,457	5,000	Yes	1978-06-24	Ye	적정	Yes	기업회계기준	Ye	모두충		

								s			서	s	족
롯데상강	37,514	500	Yes	378,050	5,000	Yes	1973-05-09	Ye	적정	Yes	기업회계기준	Ye	모두총
매일유업	1,727	50	Yes	20,730	500	Yes	1999-05-14	Ye	적정	Yes	기업회계기준	Ye	모두총
빙그레	6,432	500	Yes	40,225	5,000	Yes	1979-03-31	Ye	적정	Yes	기업회계기준	Ye	모두총

(주 1)	증권발행및공시등에대한규정 제5-13조에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롯데상강의 2010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상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을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

b. 상대가치 산정

유사회사의 상대가치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피합병법인(평가대상회사)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며,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또는 전환사채 등의 주당 행사가액의 최근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인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을 경우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상대가치로 합니다.

피합병법인(평가대상회사)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대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금 액
A. 비교가치 평균을 할인한 가액(c)과 최근거래가액(d)의 산술평균	9,558
a.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	13,655
b. 할인을율 (주1)	30%
c.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을 할인한 가액 (c = a × (1 - b))	9,558
d. 최근거래가액 (주2)	-
B.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	318,938
C. 상대가치 (Min[A, B])	9,558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1항 1호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를 할인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1항 2호에 따라 분석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피합병법인(평가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주당 행사가액입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유사회사의 주가 (주1)	순자산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주당순자산	주당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 이익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남양유업	818,000	785,101	886,662	885,457	134,272	10,597
롯데삼강	388,500	476,057	1,259,243	378,050	37,514	16,457
매일유업	13,850	277,780	13,400,000	20,730	1,727	12,378
빙그레	55,400	396,268	9,851,241	40,225	6,432	15,186

(주 1)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로부터 1월간의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
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증가를 상회하는 경우 분석기준일의 전일증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주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최근 1개월 산술평균 주가	2011년 8월 19일 증가	유사회사의 주가 (Min[A,B])
남양유업	864,900	818,000	818,000
롯데삼강	422,025	388,500	388,500
매일유업	14,145	13,850	13,850
빙그레	57,885	55,400	55,400

유사회사의 조정 후 순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직전사업연도 자산총계	순자산 조정금액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주)	주당순자산 (원)
		차감항목			가산항목				
		실질가치 없 는 무형자산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평가감	최근사업연도 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감소 액	자기주식	최근사업연도 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증가 액			
남양유업	764,138	-	-	-	20,963	-	785,101	886,662	885,457
롯데삼강	476,057	-	(1)	-	-	-	476,057	1,259,243	378,050
매일유업	267,633	-	(56)	-	10,203	-	277,780	13,400,000	20,730
빙그레	373,786	-	-	-	22,482	-	396,268	9,851,241	40,225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3항 제1호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3절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합병시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합병과 관련된 자문비용, 합병비율평가를 포함한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실사비용 등 제반 비용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5. 자기주식 등의 소유현황 및 처리 방침

(단위:주)

구분	종류	합병 전 수량	합병 전 비율
주식회사 롯데삼강	자기주식	51	0.00%
	피합병회사 주식	846,005	100%
파스퇴르 유업 주식회사	자기주식	-	-
	합병회사 주식	-	-

주)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지분율 100%)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합병법인의 종업원으로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7. 채권자보호 절차

가. 채권자의 이의제출

상법 제527조의5에 의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1년 9월 30일 (예정)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1년 9월 30일 ~ 2011년 10월 31일 (예정)

- 공고신문

주식회사 롯데삼강 : 서울특별시내 발행 한국경제신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내 발행 매일경제신문

- 이의제출처

주식회사 롯데삼강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1번지 롯데삼강 기획담당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1번지 파스퇴르유업 재무팀

제4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건 발생 시 즉시 재공시하겠습니다.

제5절 합병상대방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1987년 1월 14일 설립되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에 본사를 두고 시유 및 버터, 치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최근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단위:원)

과 목	2010년	2009년	2008년
I. 유동자산	28,425,072,791	29,326,930,024	34,240,041,439
(1) 당좌자산	18,288,671,890	18,112,258,197	22,525,978,581
(2) 재고자산	10,136,400,901	11,214,671,827	11,714,062,858
II. 비유동자산	28,871,230,023	30,825,681,081	32,243,337,831
(1) 투자자산	10,002,000	11,502,000	13,502,000
(2) 유형자산	27,199,724,693	29,236,891,040	31,255,183,215
(3) 무형자산	223,383,255	171,265,041	261,558,616
(4) 기타비유동자산	1,438,120,075	1,406,023,000	713,094,000
자산총계	57,296,302,814	60,152,611,105	66,483,379,270
I. 유동부채	35,842,599,174	38,479,458,884	43,689,515,547
II. 비유동부채	16,591,815,692	16,164,207,996	14,768,355,783
부채총계	52,434,414,866	54,643,666,880	58,457,871,330
I. 자본금	4,230,025,000	4,230,025,000	4,230,025,000
II. 자본잉여금	6,709,442,298	9,820,416,180	9,820,416,18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264,716,309)
IV. 이익잉여금	(6,077,579,350)	(8,541,496,955)	(5,760,216,931)
자본총계	4,861,887,948	5,508,944,225	8,025,507,940
매출액	123,377,999,233	132,156,061,241	134,244,122,784
영업이익	634,488,071	(2,255,105,287)	(2,051,870,27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52,030,259)	(3,261,641,227)	(7,177,943,565)
당기순이익	(647,056,277)	(2,781,280,024)	(7,083,862,733)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제6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종속회사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 겸직

구분	(주)롯데삼강	파스퇴르유업(주)
김용수	대표이사	대표이사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관계

피합병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 내용

가. 출자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2010년 중에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매입하였습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라. 매출·매입 거래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내역	2010년	2009년
매출	-	-
매입	369,184	-

마. 영업상 채권·채무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10년 말	2009년 말
채권	-	-
채무	64,242	-

제7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향후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주식회사 롯데삼강과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1) 본 계약은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주식회사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제18호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2.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 등의 내용

2009년 10월 1일 자로 (주)롯데삼강은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주)식품사업본부를 영업양수하였습니다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1) 합병 전·후 주식회사 롯데삼강 대주주의 지분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 전 취임한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합니다. 그 외에 합병이 완료된 후 당사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합의·계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라. 사업계획 등

주식회사 롯데삼강은 합병이 완료된 후 소멸회사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의 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그 밖에 당사가 향후 특별히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주요 사업은 없습니다.

마.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천원)

구분	주식회사 롯데삼강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합병 후
I. 유동자산	255,715,872	32,792,555	288,182,634
1. 당좌자산	170,957,052	18,287,758	188,919,017
2. 재고자산	84,758,820	14,504,797	99,263,617
II. 비유동자산	483,802,260	27,885,496	506,163,458
1. 투자자산	163,877,691	10,002	104,329,020
2. 유형자산	312,640,623	26,468,468	349,845,481
3. 무형자산	4,455,258	185,522	48,177,841
4. 기타비유동자산	2,828,688	1,221,504	3,811,116
자산총계	739,518,132	60,678,051	794,346,092
I. 유동부채	151,951,083	34,051,585	185,676,875
II. 비유동부채	105,902,479	18,273,219	129,542,857
부채총계	257,853,562	52,324,804	315,219,732
I. 자본금	6,296,215	4,230,025	6,296,215
II. 자본잉여금	4,464,712	6,709,442	4,464,712
III. 자본조정	(261)	0	(261)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866,375	0	40,866,375

V. 이익잉여금	430,037,529	(2,586,220)	427,499,319
자본총계	481,664,570	8,353,247	479,126,360
부채와자본총계	739,518,132	60,678,051	794,346,092

주) 2011년5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지 않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후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각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합병계약서

- 각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각각의 서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